

의안번호	2206095
의 퇴 인	정동영 의원
회 답 일	2024. 12. 18.
추 계 번호	24B554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보건안전 실태조사, 집배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체육시설 이용 지원, 퇴직우편집배관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67억 1,000만원(연평균 93억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95	0	0	0	0	95	19
보건안전 실태조사 (안 제7조)	50	0	0	0	0	50	10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회 (안 제8조)	27	27	27	27	27	135	27
집배업무환경측정 (안 제10조)	158	0	0	0	0	158	3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안 제11조)	7,364	0	7,662	0	7,971	22,997	4,599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안 제12조)	20	20	20	20	20	100	20
체육시설 이용 지원 (안 제13조)	4,252	4,337	4,424	4,512	4,603	22,128	4,426
퇴직우편집배관 교육지원(안 제14조)	148	175	213	242	269	1,047	209
계	12,114	4,559	12,346	4,801	12,890	46,710	9,342

주: 1. 각 재정수반요인 별로 가정한 용역단가, 위원회 인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건강진단 주기·인원 및 단가, 민간 체육시설 이용 인원 및 단가, 퇴직집배관 인원 및 교육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우편집배관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집배업무 환경측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질병요인으로부터 우편집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평가(이하 “집배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우편집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우편집배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2조(역학조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정함(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3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복지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복지시설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우편집배관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그 밖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우편집배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3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 등
3	안 제7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2024년도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 참고
4	안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023년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사례 참고
5	안 제10조(집배업무환경측정)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2024년도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연구용역 예산 참고 - 집배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사례 참고
6	안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단가를 적용하여 매 2년마다 우편집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가정
7	안 제12조(역학조사)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2024년도 소방공무원 공상입증지원 사업 예산 참고
8	안 제13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체육시설 미설치 관서에 근무하는 집배관에게 근처 민간 체력단련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9	안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	연도별 퇴직예정자수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지원사업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 등을 제외하고, 안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실태조사), 안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안 제10조(집배업무환경측정), 안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안 제12조(역학조사), 안 제13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안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년도에 실시하고, 연도별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1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2023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¹⁾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20명의 75%인 15명 위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²⁾ 지급하며, 회의를 연 12회씩(본회의 3회, 분과위원회 9회)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 회의 장소 대여 및 회의 비품 마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이미 편성된 운영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1) 위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민간위원 9명, 75%), 2021~2023년 연평균 25회 회의 개최(본회의 6회, 분과위원회 19회)

2)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집배업무환경측정)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배업무환경 측정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평가 하여야 하므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집배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특수건강진단) 제정안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우편 집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우편집배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집배관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 2년마다 우편집배관 전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³⁾, 특수건강진단 실시 우편집배관 중 2차 검진 소견이 나온 우편집배관(특수건강진단 실시 우편집배관 중 10% 가정)⁴⁾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역학조사) 제정안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제정안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편집배관의 체력 증진 등을 위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우편집배관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편집배관에게 근처 민간 헬스장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
- (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제정안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우편집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퇴직우편집배관의 재고용은 우정사업본부의 인사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재취업 대상 인원, 재취업 직위, 적정 연봉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지원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은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주기를 6개월~24개월(대체로 화학적 인자 노출 종사자는 6개월~12개월, 분진 및 소음 등 노출 종사자는 24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와는 별도로 우편집배관에 특정된 유해인자를 결정하고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화학적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우편집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 주기를 24개월로 가정함

4) 우정사업본부의 2023년 우정 종사원 건강검진 인원(38,763명) 대비 뇌심혈관 고위험군 진단(5,428명) 비율(14.0%)을 참고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자 중 10%에 대해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업 교육비를 적용하여 은퇴지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중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민간 헬스장 1년 회원권, 퇴직우편집배관 은퇴지원교육 등의 비용은 소비자물가상승률⁵⁾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5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900만원)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9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의 2023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등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평균 값인 9,500만원으로 가정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0.)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1	2.0	2.0	2.0	2.0	2.0

[표 2]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중장기계획	집행액
202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2021~2025)	129
202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6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95	0	0	0	0	95	19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실태조사(안 제7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000만원)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표 4] 집배관 보건안전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건안전 실태조사	50	0	0	0	0	50	1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위촉직 위원 수에 회의수당과 회의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3,5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2,700만원)

- 본회의(3회): 위촉위원수(15명) × 회의참석수당(30만원) × 회의횟수(3회/연) × 5년 = 6,750만원
- 분과회의(9회): 위촉위원수(5명) × 회의참석수당(30만원) × 회의횟수(9회/연) × 5년 = 6,750만원

[표 5]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27	27	27	27	27	135	27

주: 1. 위촉직 위원은 총 15명, 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의 횟수는 매년 본회의 연 3회, 분과회의(위촉직 위원 5명씩) 연 9회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위원 구성과 수당 단가 및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우편집배관 집배업무환경측정(안 제10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집배 업무환경측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5,8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3,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건강 유해인자 노출평가 연구용역 예산 1억 5,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제정안은 집배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 포함 12명(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1차년도(2025년)에 3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위원회 운영비는 810만원(9명×30만원×3회)

6) 제정안 제8조제7항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으나 본 추계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고 가정

[표 6] 우편집배관 집배업무환경측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집배업무환경측정	158	0	0	0	0	158	32

주: 1.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 및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안 제11조)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⁷⁾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편집배관이 노출되는 업무환경에 특정한 유해인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임
 - 안 제10조의 집배업무환경측정을 통해 우편집배업무에 고유한 유해인자를 평가·결정한 이후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할 예정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화학인자 노출 근로자 6개월, 석면 분진 노출 근로자 12개월, 소음 및 광물성·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24개월 등인데, 향후 집배업무환경측정에서 우편집배관 노출 유해인자가 특정될 예정으로 해당 유해인자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하면 우편집배관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24개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7)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표 7] 특수건강진단의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6개월
2	벤젠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12개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발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단가와 정밀건강진단 단가를 적용하여 매 2년마다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9억 9,7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5억 9,900만원)
 - 특수건강진단: 총 집배관수(18,447명) × 특수건강진단비용(30만원) = 55억 3,410만원
 - 정밀건강진단: 총 집배관수(18,447명) × 정밀건강진단 대상자 비율(10%)⁸⁾ × 정밀검진비용(99.2만원) = 18억 2,994만원
 - 건강진단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8] 우편집배관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7,364	0	7,662	0	7,971	22,997	4,599
특수건강진단	5,534	0	5,758	0	5,990	17,282	3,456
정밀건강진단	1,830	0	1,904	0	1,981	5,715	1,143

주: 1. 특수건강진단은 총 우편집배관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고,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실시자의 10%에 대해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진단 인원 및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3.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우정사업본부의 2023년 우정 종사원 건강검진 인원(38,763명) 대비 뇌심혈관 고위험군 진단(5,428명) 비율(14.0%)을 참고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자 중 10%에 대해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안 제12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소방공무원 공상입증 지원사업 예산을 참고하면,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으로 추계(연평균 2,000만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2024년도 소방공무원 공상입증지원 사업 예산 2,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표 9]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20	20	20	20	20	100	2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체육시설 이용 지원(안 제13조)

- 안 제13조제4항은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방법을 알 수 없으나, 복지시설 중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근무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편집배관(7,087명)⁹⁾에게 근무지 근처의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체육시설 이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1억 2,8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4억 2,600만원)
 - 우편집배관수(7,087명) × 600,000원(민간 헬스장 1년 회원권 비용)¹⁰⁾ = 4,252 백만원
 - 민간 헬스장 회원권 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총괄국급 248개 관서 중 체육시설이 없는 관서는 95개이고, 95개 해당 관서에 근무 중인 집배관의 총수는 7,087명임

10)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 헬스장 1년 회원권 비용(2024년 12월)

[표 10] 체육시설 이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체육시설 이용 지원	4,252	4,337	4,424	4,512	4,603	22,128	4,426

주: 1. 체육시설이 없는 관서(총괄국급)에 근무하는 우편집배관이 민간 헬스장 1년 회원권(60만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것으로, 실제 이용 인원 및 회원권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민간 헬스장 회원권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퇴직우편집배관 교육 지원(안 제14조)

○ 연도별 퇴직예정 우편집배관 수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지원사업 교육비 단가를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억 4,7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2억 900만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지원사업 교육비 기준: 46.1만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3박4일 + 온라인: 숙박비 30.7만원, 운영비 15.4만원)

[표 11] 연도별 퇴직예정 우편집배관 수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퇴직 예정자 수	322	372	443	494	5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12] 퇴직우편집배관 교육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퇴직우편집배관 교육 지원(a×b)	148	175	213	242	269	1,047	209
퇴직예정자 수(a)	322	372	443	494	537	2,168	434
교육 단가(b)	0.46	0.47	0.48	0.49	0.50	—	—

주: 1. 연도별 퇴직예정 우편집배관 수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사업 교육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퇴직 인원 및 교육비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교육비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각 재정수반요인 별로 가정한 용역단가, 위원회 인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건강진단 주기·인원 및 단가, 민간 체육시설 이용 인원 및 단가, 퇴직집배관 인원 및 교육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